검토사항 적합 여부 가지급금인정이자 세무조정 특수 관계인 •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- 법령§2 (정의) 예 아니오 특수 관계인의 가지급금 • 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 단, 아래의 경우에는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 (법칙§44) ① 미지급소득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②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는 자의 급여 등 대납액 ③ 우리사주조합에 대여한 주식취득자금 ④ 퇴직금전환금 ⑤ 귀속불분명에 대한 대표자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⑥ 직원에 대한 급료의 가불금･경조사비･학자금 ⑦ 중소기업의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･전세자금 대여액 예 아니오 적용 이자율 • 당좌대출이자율(원칙：가중평균) 적용대상 여부 (법령§89③) - 단,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는 3년간 계속하여 적용 예 아니오 가지급금 인정이자 • 적정 인정이자 익금산입 여부(법령§89⑤⑥) - 익금산입 요건：시가와 장부상 이자계상액의 차액 ≥ 3억원 또는 시가 × 5%(법령§88③) 예 아니오 미수이자 회수여부 •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미수이자에 대해 익금산입 소득처분(상여 등) 하였는지 여부(법령§11(9)) 예 아니오 가지급금 회수여부 •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해 익금산입 소득처분(상여 등) 여부(법령§11(9)) 예 아니오 지급이자 손금부인 • 법법§28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였는지 여부 예 아니오